#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11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박용갑·조 국·박정현

황정아・황 희・한민수

조승래 · 장종태 · 조인철

정준호 • 전용기 • 문진석

허 영·박희승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택배·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화물차"라 한다)를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하며,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단,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경유화물차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교환자동 차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6조의3의 구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 략)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4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	
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	
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6년 12월 31일</u>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
	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동
	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
	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자동
	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 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 유화물차"라 한다)를 2024년 1 0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 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신 조차(新造車)에 한정하며, 경유 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조차" 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취 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 한다. 단, 노후경유화물차 1대 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 감한다.